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38

발의연월일: 2021. 8. 20.

발 의 자:오기형・진성준・신정훈

정필모 • 윤재갑 • 유동수

이용우 · 홍성국 · 김영배

홍정민 · 김진표 · 윤영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시효가 정해져 있고, 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열람·복사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 진행의 예외에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.

한편,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, 동의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됨.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처분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

를 마련하여,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0조제10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부터 진행한다.
- 1.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
- 2.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
- 3.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
- 4.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
- 5.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의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	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
공정거래에 관한 법률	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전부개정법률	전부개정법률
제90조(동의의결의 절차) ① ~	제90조(동의의결의 절차) ① ~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
	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
	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
	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
	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
	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부
	터 진행한다.
	1.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
	취소한 때
	2.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
	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
	<u>결정한 때</u>
	3.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
	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
	<u>때</u>
	4.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
	료된 때

	5.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
◎ (생략)	<u>①</u> (현행 제10항과 같음)